

연봉제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12. 02. 13
개	정	2013. 11. 21
개	정	2019. 07. 05
개	정	2021. 03. 15
개	정	2023. 09. 1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연봉제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시의 연봉 계산) 연봉제규정 제7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의 연봉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 지급한다.

제3조(결근자의 연봉 계산) 연봉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자의 체수당 지급제한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한다.

제4조(비상시의 지급) 연봉제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봉의 지급방법) 연봉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리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계좌입금 시킬 수 있다.

제6조(기본연봉 지급기준) 연봉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부가급여 지급기준) 부가급여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수당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수당의 지급은 등록일의 해당 월부터 계산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 연봉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간외 근무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시간외 근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라. 시간외 근무 명령권자는 개인별 시간외 근무내역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수지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야간근무수당도 “나”, “다”, “라”목의 요령과 같다.
- 바. 개인별 근태관리시스템(지문인식)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위 “나” 내지 “마”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연차수당

- 가. 취업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 나. 취업규정 상의 휴가기간 병가기간 및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4. 당직수당

- 가. 당직수당은 당직근무규정에 의하여 재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5. 위험근무수당

- 가.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구분은 “별표 1”과 같다.

6. 가족수당

-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나. “가”목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2021.3.15.>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2021.3.1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2021.3.15.>

- 삭제<2021.03.15.>

- 삭제<2021.03.15.>

- 삭제<2021.03.15.>

- 다. “나”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전문개정 2021.3.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 라.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주민등록표를 급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바.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 사. 대표이사는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아. 부양가족 중 셋째자녀부터는 연봉제규정 “별표 8” 가족수당 지급표에 의거 1인당 추가자녀가산금을 지급한다.

7. 자녀학비보조수당

- 가. 임·직원의 자녀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나. “가”목에 있어서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체육특기자로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다.
- 다. “가”목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비”라 함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개정 2019.7.5.>
- 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급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담당부서의 장은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마.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목의 기별수당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제8조(정액급식비) 연봉제규정 제42조에 의한 정액급식비는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자 및 신분 변동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성과상여금) 연봉제규정 제32조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피복지급) 연봉제규정 제43조에 의한 피복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구입

가. 피복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조 구입한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 지급대상, 수량, 색상 등은 사정에 따라 재단에서 지정한다.

2. 지급관리

가. 피복의 지급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19.>

나. 지급관리 책임자는 피복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피복을 지급받는 자가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수 또는 세탁한 후 후임자에게 규격을 선별하여 적의지급한다.

3. 착용자의 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모형 및 제식을 변경하거나 부착물(재단 명칭이나 표시 등)을 제거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 세탁 또는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4. 중도채용자에 대한 지급

피복의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채용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회수 보관품에서 지급하거나 신규로 제조구입하여 지급한다.

5. 변상

지급된 피복을 훼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자비로 제조구입하여 착용한다.

6. 착용기간

지급된 피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상 재해인정) ① 업무상 재해는 재단의 인정을 받아야하며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단업무와 관련한 외부인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한 신체상, 재산상 재해

2. 대중교통수단, 재단이 제공한 차량 및 자가운전(운전보조비 지급 여부 불문)을 통한 재단업무수행(출퇴근포함)중 발생한 재해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취업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해

②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의 경우)



5. 소속부서장 의견서

6. 기타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요양보상 범위) 연봉제규정 제47조에 의하여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요양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연봉제규정 제48조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3”과 같다.

②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14조(유족의 범위) 연봉제규정 제49조에 의하여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사망당시 그에 인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 및 조부모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및 조부모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삭제<2013.1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수당 지급구분표

갑 종	을 종
○ 전주 상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3,300볼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자 ○ 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지하 2미터 이상에서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작업에 종사하는 자 ○ 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2]

업무상 질병 및 요양의 범위

업 무 상 질 병 의 범 위	요 양 의 범 위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준용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제와 의자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 수술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별표 3〕

신체장애 등급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구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 2 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외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3 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4 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5 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2. 한 팔을 원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무지를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6 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절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손의 5개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 7 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8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5개 수지 또는 무지와 수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수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기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등 급	신 체 장 해
제 8 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무지를 상실한 자 4. 한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cm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제 9 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6.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을 전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이외의 3개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 10 등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장애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0 등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한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한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한 다리가 3cm정도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 족지를 상실한 자 - 한 발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제 11 등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cm이상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
제 12 등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2 등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중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4. 외모에 추상이 남은 여자
제 13 등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cm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3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 족지가 폐용된 자
제 14 등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상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상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 할 수 없는 자 8. 한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10.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별표 4]

임원의 기본연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비 고
대 표 이 사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 상당	

※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우수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과 계약 시 연봉 인상 가능

직원의 기본연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공무원 재 단	기 준 표						비 고
	공 무 원 4 급	공 무 원 5 급	공 무 원 6 급	공 무 원 7 급	공 무 원 8 급	공 무 원 9 급	
2 급	당해 연차 (호봉) 상당						기 본 연 봉 은 원 율 용 인 공 인 준 상
3 급		당해 연차 (호봉) 상당					
4 급			당해 연차 (호봉) 상당				
5 급				당해 연차 (호봉) 상당			
6 급					당해 연차 (호봉) 상당		
7 급						당해 연차 (호봉) 상당	



(별지 제1호 서식)

초과근무명령서

[illegible]

※구분 란에는 시간외, 야간으로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초과근무 내역서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9.19.>

()월 시간 외 근무 내역표

수신 :

확인자

부장

(인)

직 급	성 명	금 액	청 구 인	일 자 시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